

미국의 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val Description Rules in the United States

한 경 신(Kyung-Shin Hahn)**

목 차

- | | |
|-----------------------------|---------------------------------|
| 1. 서론 | 4. 2 APPM2 |
| 2. 기록물기술의 표준화 | 4. 3 AACR2R 제4장과 APPM2의
내용분석 |
| 3. 미국의 기록물기술 표준화의 발달 | 5. 우리의 기록물기술 표준화의 방향 |
| 4. 미국의 기록물 기술규칙 | 6. 요약 및 결론 |
| 4. 1 AACR2R 제4장 Manuscripts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기술의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의 기록물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발달과정과 기록물 기술규칙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의 기록물기술 표준화를 위한 기술규칙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록물기술의 표준화의 의의와 미국에 있어서 기록물기술 표준화의 발달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기록물 기술규칙으로 사용 중인 AACR2R 제4장 Manuscripts와 APPM2의 제정배경 및 특징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들 규칙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고, 우리의 기록물기술 표준화를 위한 기술규칙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e of the directions of standardization for our archival descrip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fforts of standardization for archival descrip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archival description rules. In this study, therefore, the standardization for archival description and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are examined as the backgrounds. Then the establishment backgrounds, peculiarities, and contents of the Chapter 4 Manuscripts of AACR2R and APPM2 are analyzed. And the directions of archival description standard rules in our archival description are presented.

키워드: 기록물기술, 기록물기술규칙, 기록물기술표준화

Archival Description, Archival Description Rules, Archival Description Standards, AACR2R, APPM2

* 본 논문은 2004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hks0330@mail.hannam.ac.kr)

*** 논문접수일자 2004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12월 16일

1. 서론

기록물은 어떤 개인이나 조직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 또는 수집하여 조직된 자료 중에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가치로 인해 보존되어지는 문서 또는 문헌으로(최정태 2001, 20), 그들의 자료적 가치로 인하여 기록관에 보존·관리되고 이용되어진다. 따라서 이들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기록물의 배경과 내용을 구분하고 설명하기 위한 기록물기술은 기록관의 소장기록에 대한 확인·관리·소재 파악 및 해석 등에 도움을 주며, 소장 기록물이 선택된 경위와 기록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기록관의 주요한 핵심과제이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캐나다·호주 등의 기록물관리 선진국들은 일찍이 기록물의 증대와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 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¹⁾ 또한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는 IFLA의 ISBD(G)를 모델로 하여 1994년에 ISAD(G), 2000년에는 ISAD(G)2인 기록물기술에 대한 일반규칙을 제정하여 전 세계의 기록물기술을 위한 26개의 공통 데이터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가장 오랫동안 기록물기술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해 왔다. 미국의회도서관(LC)은 그들의 메뉴스크립트자료의 기술을 위하여 1967년 영미목록규칙(AACR) 초판 제10장 Manuscripts를 간행하여 기록물 기술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규칙은 도서관의 인쇄자료에 기초한 규칙으로 기록물기술에는 부적절하였다. 따라서 그 후 메뉴스크립트와 기록물의 기술에 필요한 규칙들을 보충하여 AACR2 제4장 Manuscripts(Including Manuscript Collections)를 1978년 출판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도서관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된 규칙으로 복잡한 기록물의 수직·수평적 관련성, 생산배경 물리적 특성 등을 기술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 그리하여 LC의 메뉴스크립트과(Manuscript Division)는 AACR2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능한 한 계속 유지하는 기록물 기술규칙을 제정하기로 하고, NEH(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의 원조하에 1983년 APPM을 제정하게 되었다.

APPM은 기록물의 특성, 특히 기록물의 계층구조를 내포한 최초의 기록물 기술규칙으로, 기록물과 메뉴스크립트의 기술표준으로서 미국 기록물계의 승인을 받았다. APPM은 그 후 개정을 통해 1989년 APPM2를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가 발행하였다. 이 APPM2는 USMARC AMC(Archives and Manuscripts Control)와의 통합을 시도한 것으로, 기록물을 다른 도서관자료들과 통합한 온라인 열람목록시스템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APPM2는 AACR2의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한 기록물 기술규칙이나 완전한 기술규칙은 아니다. 따라서 APPM2 사용시 보다 상세한 규칙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AACR2의 적절한 규칙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

1) 미국의 APPM(Archives, Personal Papers and Manuscripts)을 비롯한 영국의 MAD(A Manual of Archival Description), 캐나다의 RAD(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호주의 ACPM(Australia Common Practice Manual).

서의 기록물기술을 위한 기술규칙은 APPM2와 함께 AACR2 제4장 Manuscripts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OCLC, RLIN 등과 같은 미국 내 세계적인 서지유틸리티들을 비롯한 많은 각종 기록관, 도서관, 역사단체 등에서 이들 규칙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 선진국, 특히 미국의 기록물기술 표준화의 발전과정과 그들의 기록물 기술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기록물 기술규칙의 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록물기술에 대한 이렇다 할 정형화된 방법조차 없으며, 몇 가지 항목 기입형식을 갖는 목록이 전부인 실정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기록관리학」 대학원과정이나 신설되고 각종 기록관련 전문단체들이 설립되면서 그동안 기록물 및 기록관에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기록물기술 분야에 관련된 연구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록물기술 표준화를 위한 진전된 실행이 없이 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기록물 기술규칙의 분석을 위해 먼저 기록물 기술의 표준화에 대해 살펴본 후, 미국 기록물 기술규칙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기록물 기술규칙으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APPM2와 AACR2R 제4장을 대상으로 이들의 구조와 각 기술사항에 따른 규칙 및 특징들을 자세히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 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

록물 기술규칙 제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록물기술의 표준화

기록물기술은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물의 배경과 내용을 구분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록관의 소장기록에 대한 확인·관리·소재파악 및 해석 등에 도움을 주며 소장기록물이 선택된 경위와 기록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기록관의 주요한 핵심 과제이다. 따라서 기록관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기록관을 위한 여러 종류의 검색도구를 작성하고 거기에 담을 기술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도서관계가 일찍부터 도서관자료에 대한 목록규칙의 표준화를 시도해 온 것과는 달리, 세계 각국의 기록관들은 그들의 로컬특징의 해결점들을 선호하면서 각자 독자적인 기술규칙을 만들어 사용하여 왔었다. 그들은 기록관에 소장된 기록물들은 도서관자료와는 다른 유일본들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기술규칙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기록물기술 표준에 대한 문제를 단순하게 무시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기록물기술 표준의 부재는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는 기술업무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기록물기술 업무는 기록관의 가장 핵심업무로서 모든 기록물의 관리단계, 즉 수집·정리·배열·열람·관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형화되고 성문화된 기술표준을 제정하여 기술의 일관성을 유지해

야 한다. 그리고 기술의 데이터요소와 기술의 상세도를 결정하는 기술레벨에 대한 선택기준이 불완전하면, 동일 정보를 반복 기술할 소지가 있으며, 또 이로 인해 인적·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김영지 2002, 13). 또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기관간·국가간의 원활한 기록물 정보교류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록물 기술의 표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물기술은 기원전 1500년에서 비롯되며, 미국에서의 최초의 메뉴스크립트 목록규칙은 1888년에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의 기록전문가들은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록물기술의 표준화를 시작하지 못하였다(Duff 1998, 227). 따라서 기록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다 완전하게 표현한 성문화된 기록물기술 표준을 제정하여 기록물 기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물기술 표준화의 목적은 명백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포괄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 각 기록물 세트에 관하여 고유한 기술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기록물 기술을 통하여 소장기록물의 관리적·행정적인 통제와 지적통제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기록물기술 분야에서의 표준은 집단기술이나 다층구조기술원칙과 같은 일반적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지침에서부터 자동화된 목록시스템에서의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 정확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까지에 걸쳐 있다. 기록물의 기술 정보는 항상 구조적으로 전달되어야 하고, 기록관 내부에서는 항상 일관된 용어와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록물 정보의 교환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각 기관 내부의 표준은 현존하면서

계속 발전되어가고 있는 국가적 표준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국가적 표준은 국제적 표준에 기초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기록물 기술은 항상 이용자들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식·순서·용어로 그들에게 기록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Miller 2002, 130).

기록관에서 아키비스트가 사용하는 기록물기술 표준에는 기술규칙, 기술포맷 및 용어의 3가지 표준영역이 있다. 이 중 기술규칙은 기술포맷 내에서 제목이나 일자 같은 정보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규칙이고, 기술포맷은 데이터구조로서 기록물정보가 나타나는 도구 또는 정보를 담는 그릇을 말하며, 용어란 기록물기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목록을 말한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기록물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기술규칙, 기술포맷 및 표준용어에 기초한 기술을 준비하게 된다. 이들에 의한 기록물기술은 기록관 내부시스템의 일부가 되면서 동시에 국가정보교환시스템의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록물기술의 완전한 표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기록물정보의 공유와 유통, 나아가 원활한 검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표준화된 기록물 기술규칙의 필요성이 대두된 후, 미국을 비롯한 영국·캐나다 등에서는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적인 차원의 기록물기술 표준화를 위한 기록물 기술규칙을 제정하여 왔다. 이들은 1983년 미국의 APPM을 비롯한 1986년 영국의 MAD, 그리고 1990년 캐나다의 RAD로, 이들은 그 후 개정을 통해 시대에 맞는 기록물 기술규칙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²⁾ 국제표준기록물 기술인 ISAD(G)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기록

물의 출처의 원칙과 계층구조를 반영한 다층기
술구조를 기본원칙으로 한 ISAD(G)가, 1996
년에는 기록물의 전거레코드의 개발을 위한
ISAAR(CPF)(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가 ICA에 의
해 발행되었다. 또한 2000년에는 ISAD(G)2
가 발행됨으로써 국제적인 기록물기술 표준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할 수 있다.

한편, 1983년에는 기록물의 정보공유와 교환
을 목적으로 한 자동화된 표준포맷인 USMARC
AMC가 개발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기록물의
자동화된 서지기술과 관리제어를 위해 사용되
어 오고 있으며, 기록물정보를 도서관자료에 대
한 온라인 열람목록시스템에 수용함으로써 기
존 도서관자료와의 통합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1998년에는 World Wide Web
(WWW)을 통하여 기록물의 검색도구에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일
종의 메타데이터인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활용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 아키비스
트는 기록물의 매우 상세하고 독특할 뿐만 아니
라 다양한 전문분야를 위한 세부적인 주제목록
을 사용하며, 업무·물리적포맷·조직의 활동
에 대한 표준용어목록 또한 사용한다. 이를 위
하여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미국 의회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인 LCSH를 비롯한 국립의학도서
관(NLM)의 MeSH(Medical Subject Heading)
와 Getty Art History Information Program
의 프로젝트인 AAT(Art and Architecture

Thesaurus)를 들 수 있다.

이상의 3가지 기록물기술의 표준화가 마련될
때 완전한 기록물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기록물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일단
기록물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술 및 상호 테이
터교환이 가능해지므로 각 기록관간 단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 규
칙적용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면 신규 아키비
스트 및 기존의 실무자교육에도 효과적인 것이
다(김영지 2002, 13). 또한 국가적인 대규모 서
지유틸리티들과 도서관의 온라인 열람목록시스
템에 기록물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기존 도서관
자료들과의 통합검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기술을 위한 표준 중 기
술규칙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국
의 기록물 기술규칙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3. 미국의 기록물기술 표준화의 발달

미국은 가장 오랫동안 기록물기술에 관한 표
준화를 추진해 왔다. 미국에 있어서 기록물기술
의 표준화에 따른 기술규칙에 관한 관심과 발전
은 주로 도서관계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왔다.
1888년에 1876년 ALA회장이었고 후에는
Harvard 대학도서관의 사서로 봉사했던 역사
학자 Justin Winsor가 Massachusetts His-
torical Society에서 매뉴스크립트용 편목규칙
인 Cataloging Rules for Manuscripts in
U.S.를 최초로 개발한 이래(Working Group
on Standards for Archival Description

2) APPM2는 1989년에, MAD2는 1989년, MAD3는 2000년에, 그리고 RAD는 RAD 1989-1999 개정판과 RAD 1998-2000 통합개정판으로 개정되어 왔다.

1989, 441),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들은 기록물 기술규칙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40·50년대에는 기록물기술의 토대를 마련하여 레코드그룹의 개념이 정립되면서 현대 기록실무에 많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김영지 2002,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록전문가들은 1970 년대에 이르러까지 목록기술의 표준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사실상 기록물기술에 관한 연구의 움직임은 미국의회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만든 미국의 메뉴스크립트장서종합목록인 NUCMC(National Union Catalog of Manuscript Collection)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NUCMC를 위해 국가 전체차원에서 미국내 메뉴스크립트보존소들은 의회도서관에 기반을 두고 있는 NUCMC에 그들의 소장물을 보고해야 했다. 이들 소장물들에 대한 종합목록으로 1959년에 구축되기 시작한 NUCMC는 기록물 기술의 특징인 출처주의 및 원질서보존의 법칙, 집합적기술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메뉴스크립트 업무에 문헌정보처리에서 사용되는 목록방법 및 주제색인작업을 적용하고 있다(설문원 2001, 101). NUCMC는 1962년 제1권을 간행하였는데, 그 후 이것은 기록물군 기술의 모델이 되었다.

한편, 메뉴스크립트 카드목록시스템은 출처·제목·일자·내용·위치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형식을 갖춘 정보를 담고 있었으나 기록물 원칙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종종 비판을 받았다. 그것은 전후맥락의 정보를 무시한 채 연구자들을 직접 특정 기록물로 이끌고, 컬렉션에 대한 정보를 지나치게 간단히 요약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뉴스크립트 카드목록시스템은

도서관시스템과 함께 공존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1950년대의 NUCMC에서부터 1980년대의 USMARC AMC 까지 기록물기술 및 정보교환의 다양한 시스템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Miller 2002, 166).

그 후 1967년 도서관계에서는 AACR 초판을 발행하였는데, 제10장 Manuscripts는 의회도서관의 메뉴스크립트과와 NUCMC 실무의 기초가 되었으며 기록물기술 실무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AACR 초판은 모든 도서관자료, 특히 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된 목록규칙으로 기록물의 복잡한 연관성·책임성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AACR 초판의 개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77년 가을 의회도서관의 메뉴스크립트과 직원들은 AACR 초판 제10 장 메뉴스크립트의 개정을 위한 초안을 처음 받았는데, 그 초안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초안의 새로운 규칙들이 원래의 AACR 초판 제10 장에서 세워 온 표준들을 무시한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도서와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메뉴스크립트의 유일한 편목요건에 관한 이해가 훨씬 더 간과되었다고 느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도서관 메뉴스크립트과와 기술편목과(Descriptive Cataloging Division) 직원들은 논의를 거친 후, 초안되었던 규칙에 대하여 AACR 초판 제10장의 개정과 확장이 될 대체규칙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메뉴스크립트과에 의해 승인된 후 확정되었다.

1978년 AACR2 제4장 Manuscripts(Including Manuscript Collections)의 발행은 기록물 기술규칙에 무관심했던 아키비스트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너무 오랫동안

아키비스트들은 외견상 부과된 표준들에 대해 로컬특징의 해결점들만을 선호하면서 기술표준에 대한 문제를 단순하게 무시해 왔었다. 따라서 AACR2가 발행 되었을 때, 제4 장의 규칙에 기록물 기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음은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들은 기술표준에 보다 더 민감하게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자동화된 서지네트워크 세계로의 입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들은 SAA의 NISTF (National Information System Task Force가 기록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계의 MARC을 채택하였던 것과 같이, 보다 더 유용한 방법으로 기록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AACR2를 채택하였다.

AACR2 제4장은 초판에 비하여 기록물의 요구를 반영한 규칙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도서관자료를 기본으로 제정된 규칙으로, 기록물의 다양한 형태·내용·복잡한 수직적 및 수평적 관련성·생산배경·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기록물기술에는 부적합하였다. 사실상 AACR2 제4장에서의 모든 문제는 기록물의 서지적인 특성과 발행된 그리고 미발행된 자료들의 요건을 충분히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물기술의 특성에 관한 몇몇 일반적인 오해에도 관련되었다. 따라서 이들 규칙들은 특히 컬렉션이나 시리즈 레벨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기록물기술은 서지기술과 달리 동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이들 문제점들은 AACR2 제4장 뿐만 아니라 Part II (Heading, Uniform Titles and References)에서 다양한 정도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록물기술의 기본요소나 다른 검색 보조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짝트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말경, 자동화를 통한 기록물의 보존과 정보교환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한 기록 전문가들은 공통의 의사전달포맷(표준화된 데이터구조)과 공통의 규칙적용(내용의 표준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기록물계와 도서관계 사이의 역사적인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개발해 온 기록물기술 표준구조와 내용표준은 도서관의 것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즉, 미국의 기록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당한 내부적 고심과 논쟁을 그친 후, 자동화를 통하여 기록보존과 기관간의 정보교환을 쉽게 할 목적으로 주변과 연합하게 되었다(최정태 2001, 169). 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록물 이용의 증가와 컴퓨터의 발달로, 표준적인 기록물 기술규칙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동화 및 통합화의 필요성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한편, AACR2의 발행은 제4 장 Manuscripts와는 별개로 비도서자료들에 대한 규칙에 대해 국가적인 실망의 반발을 일으켰다. 따라서 특수자료 목록자그룹은 후에 Joint Committee on Specialized Cataloging으로 명명된 Joint Committee로 AACR2에 대한 몇 번의 회합을 가졌다. 그들은 각 특수자료 도서관들의 요구에 대한 AACR2의 적합성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AACR2의 몇몇 장들(chapters)은 광범위한 수정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NEH로부터의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의회도서관 또한 AACR2의 몇몇 장들은 그 특수자료 도서관들의 편목요구에 부적합하므로 그 규칙들을 보충하고 명백히 하기 위한 매뉴얼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1980년 6월, 그 Joint Committee on Specialized Cataloging은 AACR2의 자료유형 중 긴급한 관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3개 영역 즉 매뉴스크립트·그래픽자료 및 영화자료에 대한 AACR2 기반 목록매뉴얼을 준비하기 위해 NEH로부터 보조금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이들 각 매뉴얼에 대한 첫 번째 초안은 의회도서관의 이들 자료들에 관련된 각 과 (division)의 직원대표들에 의해 준비되었다.³⁾ 그리고 이들에 대한 논평과 반응을 위하여 국가적·국제적인 관련전문가들에게 회람되었다. 그 후 그들의 반응에 기초한 개정초안이 마련되었고, 매뉴스크립트 부문에서 최종 발행된 것이 APPM이다. 따라서 APPM은 기록물의 특성, 특히 계층구조를 내포한 미국 최초의 기록물 기술규칙이라 할 수 있다.

APPM을 포함한 이들 3개 영역의 새로운 매뉴얼들은⁴⁾ 2개의 기본적인 전제하에 접근하였다. 그 중 첫째는 AACR2 Part I의 기술부문의 각 장은 각 자료에 대한 본질적인 서지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규칙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들 새로운 매뉴얼들은 특히 그 구조가 ISBD 표준을 반영했던 한에서는 AACR2 전체의 구조를 고수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매뉴얼 아래 만들어진 목록레코드는 다른 AACR2 기반 기술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 3개영역의

매뉴얼들은 그들 3개의 매체에 따른 기록물기술의 표준이 되어 왔다.

1989년 Duke 대학교서관 매뉴스크립트과의 Steven L. Hensen이 편집하여 개정된 APPM2는 USMARC AMC와의 통합을 시도한 것으로,⁵⁾ 제1판에 비해 규칙은 명료해지고 상세한 부연설명을 수록하고 있으며 규칙의 배열도 변경되었다. 또한 개인명·단체명·지명·통일서명을 위한 표목의 구성과 저록의 선택에 대한 규칙도 추가되었다. 따라서 기록물과 매뉴스크립트의 기술표준으로서 미국 기록물계의 승인을 받아 SAA에서 발행하였으며, 미국의 주요 기록관·도서관·역사단체 및 RLIN이나 OCLC같은 주요 국가네트워크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기록물기술 내용의 표준화를 위한 기술규칙에 있어서 접근과 기술의 원리에 관한 규칙개발과 자동화 및 서지교환 문제에 중요성을 두고 발전하여 온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 표준화된 기록물의 정보교환과 통합은 1980년대 중반이후 서서히 무르익게 되었다.

APPM2의 목적은 첫째, APPM초판과 USMARC AMC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같은 연도에 발행되었으나 서로 다른 프로젝트의 결과물들로 같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 기술 목록의 적용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다. 기

3) Prints and Photographs Division의 Elizabeth Betz, Motion Picture·Broadcasting and Recorded Sound Division의 Wendy White와 Harriet Harrison 및 Manuscript Division의 Steven Hensen.

4) 1983년 Steven Hensen의 Archives, Personal Papers and Manuscripts: A Cataloging Manual for Archival Repositories, Historical Societies and Manuscripts Libraries, 1982년 Elizabeth Betz의 Graphic Materials: Rules for Describing Original Items and Historical Collections 및 1984년 W. White-Hensen의 Archival Moving Image Materials: A Cataloging Manual로, 이들은 모두 의회도서관에 의해 발행되었다.

5) USMARC AMC와의 통합을 위해, APPM2는 기술요소들의 명칭과 정의를 USMARC AMC 필드에 근접하게 변경하였고, USMARC AMC 필드에는 있으나 APPM에는 없던 기술요소들을 추가하였다.

록관의 인쇄자료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소장 자료, 즉 사진·그림·영화·비디오물·녹음 자료·컴퓨터파일 등에 대한 기술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셋째, APPM 초판에는 부족했던 표목에 관련된 사항을 Part II로 포함시킴으로써 접근점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기록물기술에 있어서 현재 사용되는 기술규칙은 APPM2와 AACR2R 제4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APPM2로 다룰 수 없는 영역에서 아키비스트는 AACR2나 AACR2R의 도서관표준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1996년 이후 다시 APPM2의 개정문제가 논의된 후, 이를 위한 연구그룹은 캐나다의 기록물 기술규칙인 RAD와의 통합에 의한 NARAD(North American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의 개발에 동의하였다(Duff & Haworth 1997, 210). 한편 NEH의 후원하에 2004년 SAA에 의해 발행된 CUSTARD(Canadian-U.S. Task Force on Archival Description)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Describing Archives: A Content Standard(DACS)는⁶⁾ 기록물기술의 모든 기술수준과 모든 유형의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표준으로서 앞으로 목록레코드를 위한 내용표준에서 APPM2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기술규칙으로 APPM2와 AACR2R 제4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들 규칙에 대한 아키비스트들의 초기의 실제적인 경험은 몇몇 예상했던 문제점에 대해 두려워했던 만큼 크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왔다(Hensen comp. 1989, vii). 특히 APPM의 전반적인 성공과 수락은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APPM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ACR2 제4장을 기본으로 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규칙으로, 이들 규칙에 따라 준비된 기록물기술은 근본적으로 AACR2 목록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LC·RLIN 및 OCLC 역시 APPM2에 의한 MARC레코드들은 AACR2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Hensen comp. 1989, v).

물론 AACR2R 제4장은 보다 서지지향적인 메뉴스크립트 목록유형에 대해 사용되는 반면에, APPM2는 대부분의 현대 메뉴스크립트와 기록물기술에 대해 보다 더 유용하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의 기록물기술을 위한 표준으로 간주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실상, APPM2는 단독으로의 완전한 기술규칙이 아니므로 APPM2로 다룰 수 없는 영역에서는 AACR2R과 함께 사용된다. 본 장에서는 AACR2R 제4장과 APPM2에 대해 살펴본 후, 이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미국의 기록물 기술규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4. 미국의 기록물 기술규칙

미국의 주요 기록관을 비롯한 역사단체·도서관 및 서지유틸리티들은 기록물기술을 위한

4.1 AACR2R 제4장 Manuscripts

AACR2R 제4장 Manuscripts(Including Manuscript Collection)는 도서관의 도서와

6) Describing Archives: A Content Standard, Chicago: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4.

비도서자료들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발행된 AACR2R Part I 기술(Description)의 한 장으로서 마련된 것이다. AACR2가 기초되었던 현대의 서지기술에 대한 토대를 이루는 '파리원칙'에서는 그 목록의 기능이 서지기술도구로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지적인 면이나 내용보다는 물리적인 특징과 표제지정보에 강조점을 두게 된다. 불행히도, 파리원칙은 '제원칙에 관한 성명(Statement of Principles)'에서 '도서'라는 말은 유사한 특징을 갖는 다른 도서관자료들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지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AACR2R 제4장 역시 도서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는 가정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규칙은 메뉴스크립트와 기록물 목록의 근본적인 실제와 충돌하게 되었고,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생한 APPM과 함께 기록물기술을 위해 사용된다.

AACR2R 제4장은 AACR2R 기술부문의 한 장으로, 기술되는 기록물의 유형에 따라 다른 장들의 규칙들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AACR2R, 0.23). 예를 들어, 메뉴스크립트 지도 아이টে에 대해서는 제3장(Cartographic materials)과 메뉴스크립트악보에 대해서는 제5장(Music)과 같이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AACR2R, 4.0A1). 또한 AACR2R은 특수규칙매뉴얼들의 사용을 허용하여 제4장 Manuscripts 사용시 앞서 언급한 3개영역의 특수매뉴얼, 즉 APPM을 비롯한 그래픽자료를 위한 AMIM, 영화자료를 위한 GM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래픽자료 기록물컬렉션 기술시 어려운 문제는 AACR2R 제4장과 함께 APPM2, AMIM, 그리고 AACR2R 제

8장(Graphic Materials)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의 결합은 각 자료의 특성, 한 컬렉션내의 서로 다른 물리적 포맷의 통합정도, 편목기관의 사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Matters 1990, 80), 이것은 APPM2 역시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OCLC·RLIN과 같은 주요 서지유틸리티 및 도서관들은 이들에 의해 기술된 모든 목록레코드에 대해 AACR2R에 기초된 레코드로 간주한다.

AACR2R 제4장은 도서관자료의 유형에 따른 Part I 기술의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규칙을 제외한 8개 기술사항의 동일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제4장은 메뉴스크립트의 특성상 자료의 특수제목사항·총서사항과 표준번호 및 구독조건사항을 제외한 5가지 사항, 즉 서명 및 책임사항·판차사항·일자사항·물리적기술사항 및 주기사항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일자사항은 다른 유형의 자료에서의 발행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발행자료인 메뉴스크립트의 특성 때문이다. 또한 AACR2R 제4장 사용시 표목에 관한 사항은 Part II(Headings, Uniform Titles, and References)를 적용하게 된다

4.2 APPM2

APPM 초판은 기본적으로 AACR2와 AACR2 제4장의 일반적인 구조와 이론에 기초하여 고안된 것으로, 원래의 규칙번호매김이 대체로 AACR2의 것을 유지하였었다. 그러나 APPM2의 디자인과 설계는 초판의 것과는 다소 다른데, 이것은 APPM2가 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규칙을 수용하기 위하여 장과 규칙

번호의 매김을 다소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rt I 기술에서의 유일한 장인 제1장 기록물의 기술 (Description of Archival Material)과 AACR2R 제4장 내에서의 규칙 번호매김은 대부분 일치한다. 또한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AACR2를 기본으로 제정된 APPM은 AACR2 제4장이 파리원칙에 의해 메뉴스크립트를 서지기술도구로서 도서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메뉴스크립트는 도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Hensen 1988, 543). 그리고 APPM2는 USMARC AMC와의 통합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USMARC AMC 영역에만 얼마일 필요 없이 어떠한 기록물 기술도구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APPM2는 AACR2R에서와 같이 2개의 주요한 부분, 즉 기술과 표목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된다. Part I 기술은 단 하나의 장으로 그 1장은 기록물과 메뉴스크립트 자료의 기술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며, AACR2R에서의 제1장 및 제4장과 관련된다. 이 제 장은 일반규칙을 제외한 7개의 기술사항으로 AACR2R 제4장의 순서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물의 특성상 기록물에 대하여 자료의 특수제목사항(1.3) · 일자사항(1.4) 및 총서사항(1.6)을 제외한 4개 사항 즉 서명 및 책임사항 · 판차사항 · 물리적기술사항 그리고 주기사항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그 중 일자사항은 서명 및 책임사항에서 다루도록 하여 제외되었고, 총서사항은 도서관 서지기술에서 사용하는 '총서'와의 혼동가능성 때문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들 데이터요소에 따른 규칙들의 순서와 내용은 AACR2R 제4장의

것과 유사하다.

Part II 표목과 통일서명은 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관련된다. 여기에는 접근점의 선정(제2장), 개인명표목(제3장), 지명표목(제4장), 단체명표목(제5장) 및 통일서명(제6장)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이 중 제2-6장의 규칙은 주로 AACR2R의 제21-25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의 각 규칙에는 AACR2R에 대한 특별한 규칙번호가 각 규칙다음에 각괄호 안에 제공되었다. 이것은 목록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게 될 의문점들에 관하여 AACR2R에 상응하는 규칙이나 해설에 직접 참조함으로써 빠르게 그들의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칙해설은 각 규칙에 대한 문단 다음의 칭호 [RI]에 의해 혹은 그 표목해설에 지시된다. 참조에 관한 정보는 AACR2R 제26장(References)을 참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APPM2는 USMARC AMC와의 통합을 시도한 것으로, 부록에는 APPM2에 의한 목록레코드의 실패를 비롯하여 USMARC AMC의 태깅실패 및 APPM2의 각 기술요소들과 USMARC AMC의 표시기호 및 식별기호와의 대응표를 수록하고 있다.

4. 3 AACR2R 제4장과 APPM2의 내용분석

APPM2는 예외적으로 아이템 레벨의 기술을 허용하기는 해도 기록물군 · 컬렉션 · 시리즈 및 그 구성요소들에 대한 집합적인 기술을 강조한다. 반면에 AACR2R 제4장은 전통적인 메뉴스크립트목록에서 사용되어 온 아이টে 레벨의 기술을 강조한다. 따라서 APPM2와 AACR2R 제4장은 기록물기술을 위한 표준으

로서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내용분석을 위하여 두 규칙의 기술사항 중 메뉴스크립트와 기록물기술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사항, 즉 서명 및 책임사항·판차사항·일자사항·물리적기술사항 및 주기사항과 이들 기록물기술을 위한 주정보원에 관하여 그들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접근점에 관한 내용은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4. 3. 1 주정보원(APPM2, 1.0B/AACR2R, 4.0B)

기록물이나 메뉴스크립트와 같은 미발행자료는 그들의 목록데이터를 위한 어떠한 합법화된 정보원이 없다. 따라서 이들 자료의 기술을 위한 확인은 주로 그 자료의 내용이나 전후관계로부터 서지기술을 구성하고 추출해내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AACR2R 제4장과 APPM2는 주정보원과 각 사항별 정보원을 지시하고 있다.

AACR2R 제4장은 메뉴스크립트 자료의 주정보원을 메뉴스크립트 그 자체로 규정하고, 메뉴스크립트 자체 내에서 표제지·판권기·캡션 및 그 내용 순으로 도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메뉴스크립트 컬렉션에 대해서도 전체 컬렉션 자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보원을 규정하기 어려운 미발행자료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을 정보원을 사용하라는 지시는 목록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자료를 위해 제정된 AACR2R의 일반적인 원칙이 자료의 포맷과는 무관하게 모든 자료에 동등하게 적용하여 AACR2R 전체의 동등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이들 정보원을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불행히도 인쇄

된 자료에 대한 원칙이 표제지나 발행사항 등을 갖지 않은 메뉴스크립트 자료에까지 연장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정보원에서는 다른 유형의 자료들에서와 같이 규정된 정보원 외부로부터 취해진 정보에 대해서는 각괄호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AACR2를 기초로 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APPM은 앞서 언급한 AACR2 제4장 주정보원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록물 인벤토리에서 발견되는 여러 기술요소들을 살펴본 결과, 이들 요소들은 몇몇 도서관목록의 기술요소들과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APPM은 이들의 유사점을 인정하고 이들 검색보조도구를 합법적인 목록데이터의 정보원으로 선언하고자 하였다(Hensen 1988, 545). 그리하여 이들 검색보조도구는 기록물컬렉션의 대용물로서 이용자에 의해 접근되는 것으로 사실상 주정보원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APPM은 기록물 관리과정 동안의 인벤토리·안내서 등의 이들 검색보조도구를 도서의 표제지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결국 APPM은 기록물기술을 위해 이들 검색보조도구는 도서의 표제지와 같이 표제·일자·크기 등과 같은 기술요소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원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APPM2의 주정보원은 첫째, 그 기록물자료들을 위해 준비된 검색보조도구 둘째, 출처와 입수레코드 셋째, 그 자료 자체 넷째, 기타정보원 순이다.

4. 3. 2 서명 및 책임사항(APPM2, 1.1/AACR2R, 4.1)

기록물기술에 있어서 AACR2R에 의한 서지기술과 가장 비교되는 사항은 아마 서명 및 책임

사항일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기반의 서지기술에 있어서 서명 없이는 어떠한 목록레코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표제지와 같은 주정보원은 도서관자료 목록기술의 주요 초점인 서명 및 책임사항 등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기록물과 메뉴스크립트에는 표제지와 공식적인 본서명 같은 것들이 없다. 따라서 APPM2와 AACR2R 제 2장은 서명을 주정보원으로부터 기술하는 공식서명과 목록자가 제공하는 보충서명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기록물과 메뉴스크립트의 기술을 위해 초기의 AACR 초판 제10장과 NUCMC는 자료의 형식에 기초를 둔 보충서명, 즉 'Papers', 'Records', 'Letters', 'Diaries' 등을 서명사항에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왔다. 이것은 기록물과 메뉴스크립트 자료의 서명은 기본기입과 그들 형식서명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APPM 역시 보충서명의 구별성이 아닌 자료의 형식을 강조한다.

기록물기술에 있어서 서명과 저자에 대한 기본적인 도서관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는다. 기록물에서 '저자'는 그 기록물의 기원이나 초점의 지시자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도서관의 저자의 고의적인 창조적 책임감보다 출처에 대한 기록물 개념에 관련되는 것이다. 또한 기록물컬렉션에 있어서 '서명'은 대개 형식이나 내용에 기초를 둔 목록자에 의한 보충서명으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는 서지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따라서 기록물에 있어서 서

명과 저자는 구별되어 사용되지 않고, 서명은 사실상 저자와 형식서명의 결합에 의한 보충서명에 기초를 두게 된다. 이때 형식서명은 일반적으로 간략하면서도 기록물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 구성된다. 따라서 보충서명은 각 기록물컬렉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때에 목록자는 기존의 검색보조도구나 기록물을 직접 검토함으로써 보충서명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기록물의 서명기술에 있어서 만약 한 기록물에 공식서명이 있으면 그 서명을 기술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주로 아이тем 레벨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식서명이 없는 기록물의 경우는 보충서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에 AACR2R은 그 보충서명에 대해 각괄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⁷⁾. 그러나 공식서명이 없는 거의 모든 기록물에서는 보충서명을 사용하게 되므로 거의 모든 자료에 각괄호가 사용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혼돈을 일으키게 된다⁸⁾. 따라서 APPM에서는 보충서명에 대한 합법화와 이들의 공식화를 위한 지시들을 제공하고, 서명사항에서 각괄호를 제거하였다. 그리하여 APPM2에서는 추측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각괄호를 요구하고 있다.

책임사항에 있어서 APPM은 통상적인 기록물실무에서 기록물생산자를 도서관의 저자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다. 그러나 메뉴스크립트와 기록물컬렉션·편지 및 기타 문서의 서명인(signer)에 대해서는 공식서명과

7) MHS(Minnesota Historical Society)는 일찍이 그들 기록물장서의 90%가 보충서명을 필요로 하고, 각괄호는 이용자들을 혼란시켜 왔다는 이유로 보충서명에 각괄호를 하지 않는 내부의 결정을 만들어 왔다.

8) 사실상 주정보원에 대한 AACR2의 정의가 분명하게 2차 참고정보원 같은 표제지 이외의 다른 것들을 참조하도록 확대함에 따라, 주정보원에서 전사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해 각괄호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감소된다

책임사항을 갖는 아이템 외에 책임사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AACR2R 제4장은 편지나 문서에 대한 서명(sign)이 책임사항이 되는 것을 뜻하는 실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아이템 기술일 경우이며 컬렉션에 대한 책임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들 책임사항의 이름요소들은 임의로 서명에 추가되기도 한다. 이것은 APPM2에서 확정된 것으로, 그 기록물컬렉션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APPM2는 서명의 마지막 요소로 일자(date)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APPM2, 1.1B5). 이때에 일자는 선택사항으로 반점(.)을 앞에서 기술하도록 하고, 일자에는 생산일자·축적일자(inclusive dates) 및 주요일자(bulk dates)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주요일자는 APPM2에서 규정된 것으로, 항상 축적일자를 앞세워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연·월·일의 순서로 그 일자를 기술할 수 있다. 한편 서명 및 책임사항에서 기록물자료의 각 유형에 따른 일반자료표시(GMD)는 선택사항으로 각 목록기관의 정책에 따라 본 서명 바로 다음에 각괄호 안에 추가될 수 있다. 이때에 APPM2는 AACR2R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실례: AACR2R 제4장: [Diary] / [Indian papers] / [Treatise on arithmetic] / [Lecture, Royal College of Medicine, London]

APPM2: Family Papers / Records, 1917-1969 / Bollingen Foundation records, 1939-1973 / Special charge vouchers, 1940-[ongoing] / Papers,

1703-1908(bulk 1780-1835)

4. 3. 3. 판차사항(APPM2, 1.2/AACR2R, 4.2)

기록물기술에 있어서 판차사항은 아이템 수준에서 한 아이템이 다른 아이템의 다른 버전일 경우에 사용된다. 따라서 기술대상 아이템 정보원의 판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이때 기술내용은 AACR2R 제4장과 APPM2 모두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판표시/그 판에 관련된 책임사항'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술대상 아이템의 정보원에 판에 관한 사항이 없을지라도 다른 버전과 중요한 변경이 있음이 알려진 경우, 목록자는 판차사항을 본서명의 언어로 각괄호 안에 제공해야 한다. APPM2는 판차사항에서 사용되는 약어와 숫자에 대하여 AACR2R의 부록B 약어(Abbreviation)와 부록C 숫자(Numerals)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례: AACR2R 제4장: Prelim. draft / 3rd draft / edited by Paul Watson / [2nd draft]

APPM2: Prelim. draft / 2nd draft continuity / 3rd draft / edited by Paul Watson / [Mar. 1970 draft]

4. 3. 4. 일자사항(AACR2R, 4.4)

기록물과 메뉴스크립트는 미발행자료로 발행일을 포함하는 발행사항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AACR2R 제4장은 AACR2R의 다른 자료 유형의 장들과 달리 발행사항 대신 일자사항으로 취급하여 메뉴스크립트의 아이템과 컬렉션에 관한 일자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한 메뉴스크립트 아이템의 생산일자나 한 메뉴스크립트 컬렉션의 축적일자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아이템레벨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으로 월(month)과 일(day)을 그 순서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항은 AACR2R의 다른 장들에 서와 같이 구조적으로 발행사항의 일부이다. 따라서 제4장에서 제공된 일자영역은 발행사항의 발행일로서의 기능으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일자는 필요한 경우 보충서명에 추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메뉴스크립트에 대한 별도의 일자사항을 제공하고 있어 서명의 일부로서의 일자의 역할을 다소 모호하게 하고 있다.

실례: AACR2R 제4장: Correspondence
[GMD] / William Allen. - 1829-
1879 / Records[GMD] / American
Colonization Society. - 1816-1908 /
[Speech] Glasgow Labour Club
[GMD] / James Maxton. - 1928

APPM2에서는 기록물기술을 위해 일자사항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록물에 관한 일자는 이미 서명 및 책임사항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PPM2에서 일자는 서명 및 책임사항의 부분으로 그 서명을 명확하게 하고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기록물컬렉션의 일자는 기록물의 관리과정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때때로 기록물의 관리과정에 따라 축적일자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APPM2는 기록물생산의 계속성 및 주요일자 등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4. 3. 5 물리적기술사항(APPM2, 1.5/AACR2R, 4.5) 기록물과 메뉴스크립트에 있어서 그들 자료

의 크기나 페이지수 같은 물리적인 특징은 일반적으로 그들 자료의 관리자나 이용자들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자료의 기술은 전통적으로 주로 지적인 것을 제공하는 도구로서의 목록이어 왔다. 그리하여 APPM2는 물리적인 면들에 대한 강조점을 완화하고 보다 내용관련 요소들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Hensen 1988, 549).

물리적기술사항에서 AACR2R 제4장과 APPM2 모두는 도서관자료를 위한 AACR2R과 동일한 데이터요소·기술순서 및 구두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물리적기술사항은 '자료의 수량 : 기타 물리적제목 : 크기'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록물컬렉션의 경우는 그 중 그 컬렉션의 수량과 크기만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현대의 기록물 실체와 일치하지 않는 서지적인 물리적제목의 요소는 주로 아이템 레벨 기술에만 관련된다.

물리적기술사항의 3개 요소 중 자료의 수량과 크기에 대하여 AACR2R 제4장은 메뉴스크립트 아이템과 메뉴스크립트 컬렉션으로 구분하고, APPM2는 기록물컬렉션·메뉴스크립트아이템 및 마이크로형태와 기타형태의 복사본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중 메뉴스크립트 아이템에 대한 물리적기술사항은 단행본의 것과 거의 같다.

자료의 수량에 있어서 기록물컬렉션은 점유된 직선이나 용적피트수 및 아이템총수를 기술한다. 또한 마이크로형태와 기타형태 복사본은 원본과 복사본 모두를 소장할 경우에는 2개의 분리된 사항, 즉 원본과 복사본의 각각의 수량을, 원본의 마이크로형태나 디지털화된 복사본만 소장한 경우는 그들의 총수를 자료명과 함께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APPM2, 1.5C)

기타 물리적세목에 있어서 AACR2R 제4장은 그 메뉴스크립트 아이템이 종이 이외의 자료에 쓰여 졌으면 그 자료의 이름을 기술하고, 그 메뉴스크립트 아이템이나 컬렉션에는 단행본과 같은 물리적인 세목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APPM2는 그 기록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물리적인 세부사항을 기술하도록 하여 AACR2R보다 이에 대한 더 많은 범위를 허용한다.

크기에 있어서 APPM2는 선택사항이나 AACR2R 제4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AACR2R과 APPM2의 메뉴스크립트 아이템과 컬렉션에 대한 크기는 단행본의 것과 같이 그 높이를 가장 가까운 cm까지 높이고, 만약 그 폭이 그 높이보다 반이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폭을 같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에 그 아이템이 접혀져 있는 경우는 접혀진 크기를 뒤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AACR2R, 4.5D1). 또한 기록물컬렉션의 경우 그들 자료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으면 가장 큰 크기를 기술한 뒤 'or smaller'를 추가하며, 마이크로형태의 경우는 높이×폭 형태로 그들의 크기를 cm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마이크로필름일 경우는 필름의 폭을 mm로 기술하도록 한다(APPM2, 1.5D).

실례: AACR2R 제4장: 23 leaves / [70] leaves, bound / 5ft.(30 items bound, 37 items unbound) / [20] leaves : vellum / 12 leaves : ill. : 20cm, folded to 10 × 12cm

APPM2: 87 items(0.5 linear ft.) / 20 leaves : vellum / 10 v. : 28cm, or smaller / 12 linear ft.(28 boxes) ;

26 × 10 × 39cm.[Height × width × depth] / 110 microfilm cassettes: negative ; 16mm

4. 3. 6 주기사항(APPM2, 1.7/AACR2R, 4.7)

기록물 및 메뉴스크립트 기술과 AACR2 기반 도서관자료 목록 간의 문제는 기술의 실제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실제에 있어서 이들 사이의 조정은 첫째, 각 자료의 내용과 분석에 관련된 기술영역, 즉 주기영역에 보다 많은 강조점과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둘째, 기록물과 메뉴스크립트 기술에 덜 관련된 영역들을 덜 강조하거나 재정의 함으로써 이루어져올 수 있었다(Hensen 1988, 547). 따라서 기록물기술에 있어서 주기사항은 기록물의 특성, 즉 출처, 수직적·수평적 연관성, 라이프사이클 관리 등을 명확히 기술할 수 있는 주요사항이 된다.

AACR2R 제4장은 주기사항에 17개의 주기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필사장소(Place of writing)·학위논문(Dissertations)·요약(Summary) 등 상당수의 주기는 현대 메뉴스크립트 기술목록의 실제사용에 부적절하거나 아이템 중심이며, 사실상 몇몇 주기는 다른 주기들의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몇몇 주기는 기술사항 즉 서명 및 책임사항·판차사항·일자사항 및 물리적기술사항 등에서 기술할 수 없었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주기사항 역시 도서관자료 중심의 AACR2R 전체의 동등한 구조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PPM2 역시 17개의 주기영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통적인 기록물기술 요구에 보

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이다. 그 중 AACR2R 제4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중 특히 전기/역사주기(Biographical/Historical)·연관자료설명주기(Linking entry complexity) 및 출처(Provenance) 등은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전기/역사주기에는 기술대상 기록물의 특성과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물의 생산자에 관한 정보를, 연관자료설명주기에는 목록레코드 간의 어느 복잡한 계층적인 관계를, 출처주기에는 그 기록물이 생산되어 현재의 형태로 오게 된 경위와 그 기록관에 오게 된 경위의 보관의 역사를 기술한다. 또한 APPM2의 주기사항은 AACR2R 제4장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이들 중 서로 연관된 것들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APPM2는 특히 USMARC AMC와의 통합을 시도한 것으로, 주기사항에서 AACR2R 제4장에 비하여 USMARC AMC와 보다 많은 일치점을 갖는다. USMARC AMC는 5XX 주기영역에 25개의 주기필드를 가지고 있으며, APPM2와는 주기내용 및 용어에서 많이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될 APPM은 보

다 많은 일치점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2>는 AACR2R 제4장·APPM2 및 USMARC AMC의 주기사항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주기사항에서 각 주기의 기술순서에 대하여 AACR2R 제4장에서는 각 기록관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APPM2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각 기록관에 따른 로컬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우리의 기록물기술 표준화의 방향

미국은 가장 오랫동안 기록물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해 온 나라로, 1888년의 매뉴스크립트용 편목규칙의 제정 이래 꾸준한 노력을 시도하여 왔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 기록물기술 표준화를 위한 기술규칙에 관한 관심과 발전은 주로 도서관계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왔다. 이것은 도서관계가 일찍부터 도서관자료를 위한 목록기술의 표준화를 비롯한 자동화 및 정보교환과 통합에 있어서 앞서왔기 때문이다. 1983년 의회 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위한 목록규칙 AACR2의 제4장 Manuscripts를 기본으로 기록물의

<표 1> APPM2와 AACR2R 제4장의 관련주기영역

APPM2	AACR2R 제4장
1.7B1. 전기 / 역사주기	4.7B1. 특성, 범위 및 형태주기
1.7B2. 범위와 내용/초록주기	4.7B1. 특성, 범위 및 형태주기 4.7B17. 요약주기
1.7B9. 출처주기 1.7B10. 최종입수처주기	4.7B7. 기증자, 소스 등 및 이전소유자주기
1.7B11. 접근제한주기	4.7B14. 접근과 저작권주기
1.7B12. 이용과 복제조건주기	4.7B14. 접근과 저작권주기
1.7B13. 누가색인 / 검색보조도구주기	4.7B11. 딸림자료주기

〈표 2〉 AACR2R 제4장·APPM2·USMARC AMC의 주기내용

AACR2R 제4장	APPM2	USMARC AMC
4.7B1. 특성 범위 및 형태주기	1.7B1. 전기/역사주기	500 일반주기
4.7B2. 언어주기	1.7B2. 범위와 내용 초록주기	502 학위논문주기
4.7B3. 본서명소스주기	1.7B3. 연관자료설명주기	505 포맷화된 내용주기
4.7B4. 변형서명주기	1.7B4.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주기	506 접근제한주기
4.7B5. 대등서명과 다른서명정보주기	1.7B5. 복제주기	510 인용/참조주기
4.7B6. 책임사항주기	1.7B6. 원본/복사본 소재주기	520 요약, 초록, 해제, 범위 등 주기
4.7B7. 기증자, 소스 등 및 이전소유자주기	1.7B7. 조직과 배열주기	521 이용자/이용대상자주기
4.7B8. 필사장소주기	1.7B8. 언어주기	524 인용한 자료주기
4.7B9. 발행버전주기	1.7B9. 출처주기	530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주기
4.7B10. 물리적기술주기	1.7B10. 최종입수처주기	533 복제주기
4.7B11. 딸림자료주기	1.7B11. 접근제한주기	535 원본/복사본 소재주기
4.7B13. 학위논문주기	1.7B12. 이용과 복제조건주기	540 이용과 복제조건주기
4.7B14. 접근과 저작권주기	1.7B13. 누가색인/검색보조도구주기	541 최종입수처주기
4.7B15. 발행된기술에 대한 참조주기	1.7B14. 인용주기	544 연관자료위치주기
4.7B17. 요약주기	1.7B15. 인용한 자료주기	545 전기/역사주기
4.7B18. 내용주기	1.7B16. 발행주기	546 언어주기
4.7B23. 고대 중세 및 르네상스필사본주기	1.7B17. 일반주기	555 누가색인/검색보조도구주기
		561 출처주기
		562 사본과 버전식별주기
		565 사안과일특성주기
		580 연관자료설명주기
		581 발행주기
		583 작업현황주기
		584 축적과 이용빈도주기
		59X 로컬주기

특성, 특히 기록물의 계층구조를 반영한 APPM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1989년에는 USMARC AMC와의 통합을 시도한 APPM2를 SAA가 발행함으로써 기록물을 다른 도서관자료들과 통합한 온라인 열람목록시스템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의 주요 기록관을 비롯한 역사단체·도서관 및 서지유틸리티들은 그들의 기록물기술을 위해 이들 APPM2와 AACR2R 제4장을 함께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APPM2와의 통합을 시도한 USMARC AMC를 개발, 도서관계의 MARC21에 통합함으로써 기록물정보를 열람목록시스템에 수용, 자동화 및 기록관간 기록물정보의 교

환을 통해 적극적인 참고·정보봉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록물관리분야 전반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경험 축적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기록물기술 부문에서도 아직 이렇다할 이론적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표준은 물론이고 개별 기록관 차원의 기술규칙도 확립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서혜란 2000, 9). 따라서 각 기록관이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물기술은 최소한의 기술요소만으로 기관마다 상이한 기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내부목록 수준으로 기록물의 이용자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물

자료의 공동활용 및 데이터교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록물기술 표준화를 위한 기술규칙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역사적 증거·행정 및 증빙자료로서의 기록물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1999년의 법률제정 이후, 정보원으로서 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이들의 이용은 증가되고 있다. 게다가 컴퓨터기술의 발달 및 자동화로 인하여 온라인접근을 통한 기록물에 관한 이용자요구 역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기록물기술에 대한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자동화를 통한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간의 정보교환, 나아가 도서관자료들과의 정보통합에 의한 적극적인 정보봉사를 위하여 우리의 기록물 기술규칙 제정에 의한 표준화는 시급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의 기록물기술 표준화를 위한 기술규칙 제정에 있어서의 방향에 대하여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기록물 기술규칙 제정은 기록물계와 도서관계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록물 특징을 반영한 기술규칙의 제정을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기록물계와 목록기술 표준화에서 훨씬 앞장 선 도서관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록물관련 주요 학회나 협회 혹은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물계와 특히 「한국목록규칙(KCR)」의 발행자인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도서관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우리의 기술규칙 제정에 있어서 그 내용은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의 APPM2와 AACR2R 제4장을 비롯한 캐나다의 RAD, 영국의 MAD, DACS 및 ISAD(G)2 등의 내용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의 기록문화를 반영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각 규칙과 우리의 기록물 특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록관의 여러 자료유형에 따른 기록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기록물은 인쇄자료 뿐만 아니라 사진·지도·도면·그림·영화·비디오물·녹음자료·전자자료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특히 근래에는 전자적인 형태의 기록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록물 기술규칙은 이들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서관계의 「한국목록규칙」과 통합 가능한 규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있어서 기록물과 도서관자료와의 통합을 통한 정보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KCR4에는 '고서와 고문서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이것은 대한제국(1910) 이전의 동장본(東裝本) 및 고문서만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역사적인 기록물을 기술할 수 있는 기록물 기술규칙이 요구된다. 또한 기록물계와의 협의 하에 KCR에 기록물에 관한 기술내용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록물자료의 자동화 및 정보교환을 위해 KORMARC과도 통합할 수 있는 기술규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앞으로 개정될 KORMARC 통합서지용에 기록물을 위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록물계와의 협의 하에 KORMARC 통합서지용(안)의 8개 자료 중 고서(RB)나 혼합자료(MX)를 확장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기록물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은

기술규칙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의한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하여 그 기술규칙은 시대에 따른 우리의 기록물화를 충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표준의 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규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미국의 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먼저 기록물기술 표준화의 의의에 대해 살펴본 후, 미국의 기록물기술 표준화의 발달과정과 기술규칙의 제정배경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기술규칙으로 사용되고 있는 AACR2R 제4장과 APPM2를 대상으로 그들의 내용분석을 위하여 주정보원을 비롯한 기록물을 위한 각 기술사항들에 대하여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록물기술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주요 과제인 기록물기술 표준화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기록물기술 표준화와 기술규칙에 대하여는 첫째, 미국에서의 기록물기술 표준화를 위한 기술규칙에 관한 관심과 발전은 주로 도서관계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왔다. 둘째, 미국의 기록물기술을 위해 현재 사용되는 기술규칙은 APPM2와 AACR2R 제4장으로, 이들은 혼용하여 같이 사용된다. 또한 각 기록물의 특성, 컬렉션의 서로 다른 물리적 포맷의 통합 정도 및 각 기록관의 사명 등에 따라 AACR2R의 다른 자료유형에 관한 장들과 AACR2 기

반 특수매뉴얼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셋째, 미국은 기록물기술 내용의 표준화를 위한 기술규칙에 있어서 접근과 기술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 및 서지교환 문제에 중요성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 넷째, 미국에서는 기록물기술 표준화를 위한 기술규칙·기술포맷 및 용어에 있어서 계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APPM2와 AACR2R 제4장의 내용에 대하여는 첫째, AACR2R 제4장은 보다 서지지향적인 메뉴스크립트 목록유형의 기술을 위해 사용되는 반면에, APPM2는 대부분의 현대 메뉴스크립트와 기록물 기술을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이들은 기록물기술을 위한 표준으로서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둘째, 기록물은 미발행자료로 그들의 기술을 위한 합법화된 정보원이 없다. 따라서 기술을 위한 확인은 그 자료의 내용이나 전후관계 및 그 자료로부터 추출하게 된다. AACR2R 제4장과 APPM2는 메뉴스크립트와 기록물의 유형에 따른 주정보원을 지시하고 있다. 셋째, AACR2R 제4장의 기술영역은 메뉴스크립트의 특성상 일반규칙을 제외한 8개 기술사항 중 서명 및 책임사항·판차사항·일자사항·물리적 기술사항 및 주기사항을 그 순서에 따라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일자사항은 다른 자료유형에서의 발행사항 중 발행일에 해당한다. 넷째, APPM2는 AACR2R과 같이 기술과 표목,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된다. 그 중 기술(Part I)은 기록물과 메뉴스크립트 자료의 기술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기술영역은 일반규칙을 제외한 7개 기술사항 중 기록물에 대하여는 4개 사항, 즉 서명 및 책임사항·판차사항·물리적 기술사항 및 주기사항 순으로 이들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

다. AACR2R 제4장의 일자사항에 대하여 APPM2는 서명 및 책임사항에서 다루고 있다. 다섯째, 기록물 기술사항 중 특히 도서관자료의 서지기술과 가장 비교되는 사항은 서명 및 책임사항과 주기사항이다. 이것은 기록물에서는 도서관의 표제지에서와 같은 본서명이 없으므로 보충서명을 필요로 하며 출처, 수직·수평적 연관성, 라이프사이클 관리 등과 같은 기록물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주기사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록관의 주요 핵심과제인 기록물기술을 위한 표준 기술규칙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기록관이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물기술은 표준화가 되지 못한 채 최소한의 기술요소만으로 기관마다 상이한 기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기관의 내부목록 수준으로 기록물에의 이용자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1999년 법률제정 이후, 기록물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물들을 바탕으로 한 기록물기술 표준화를 위한 실행이 뒤따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적·행정적·지적통제 및 보존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기록물 기술규칙의 제정은 시급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의 기록물 기술규칙 제정은 기록물계와 도서관계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록물 특징을 반영한 기술규칙 제정을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목록기술 표준화에서 훨씬 앞장선 도서관계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기술규칙 제정에 있어서 그 내용은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의 APPM2와 AACR2R 제4장을 비롯한 RAD, MAD, DACS 및 ISAD(G)2 등의 내용분석에 기초하여 우리의 기록문화를 반영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여러 자료 유형에 따른 기록물들을 수용하면서 도서관계의 「한국목록규칙」과도 통합 가능한 규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록물자료의 자동화 및 정보교환을 위해 KORMARC과도 통합할 수 있는 기술규칙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개정될 KORMARC 통합서지용 또한 기록물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지. 2002. 『기록물 기술규칙에 관한 연구 : ISAD(G)2 데이터요소로 분석한 APPM2, RAD 1998-2000 통합개정판 MAD2의 기술규칙 비교』.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서혜란. 2000. 기록물 기술의 표준화. 『기록학 연구』, 창간호 : 7-22.
- 설문원. 2001. 국제 표준 기록물 전거제어규칙 연구. 『지식처리연구』, 2(2) : 85-106.
- 안수현. 2001. 한국 기록기술의 표준화 연구. 『학술대회논문집(명지대)』, 1 : 27-55.
- 윤주범. 1999. 외국의 기록물 기술제도. 『기록

- 보존』, 12: 180-208.
- 이소현 등저. 2002. 『ISAD(G)를 적용한 한국 기록물 기술규칙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최정태. 2001. 『기록학개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 Duff, Wendy. 1998. "Discovering Common Missions or Diverging Goals: The State of Archival Descriptive Standard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30: 227-248.
- _____. & Kent M. Haworth. 1997. "Advancing Archival Description: A Model for Rationalising North American Descriptive Standards." *Archives and Manuscripts*, 25(2): 194-217.
- Fox, Michael J. 1990. "Descriptive Cataloging for Archival Material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11(3·4): 17-34.
- Gorman, Michael and Paul W. Winkler ed. 1988.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1988 Revisi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Hensen, Steven L. 1986. "The Use of Standards in the Application of the AMC Format." *American Archivist*, 49(1): 31-40.
- _____. 1988. "Squaring the Circle: The Reformation of Archival Description in AACR2." *Library Trends*, 36(3): 539-552.
- _____. comp. 1989. *Archives, Personal Papers, and Manuscripts: A Cataloging Manual for Archival Repositories, Historical Societies and Manuscript Libraries*. 2nd ed. Chicago: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_____. 1991. "RAD, MAD, and APPM: The Search for Anglo-American Standards for Archival Description." *Archives and Museum Informatics*, 5: 2-5.
- _____. 1992. "Standards for the Exchange of Descriptive Information on Archival and Manuscript Material in the United States." *Archivaria*, 34: 272-278.
- _____. 1993. "The First Shall Be First: APPM and Its Impact on American Archival Description." *Archivaria*, 35: 64-70.
- Hunter, Eric J. 1989. *Examples Illustrating AACR2 1988 REVISION*. London: LA.
- Library of Congress. 1983. *Archives, Personal Papers and Manuscripts: A Cataloging Manual for Archival Repositories, Historical Societies, and Manuscript Libraries*. Washington, D. C.: Library of Congress.
- MacNeil, Heather. 1990-1991. "Letters to

- the Editor: Notice of Archives, Personal Papers, and Manuscripts (2nd Edition): The Author Comments(Steven L. Hensen): The Reviewer Responds(Heather MacNeil).” *Archivaria*, 31: 5-9.
- Matters, Marion. 1990. “Reconciling Si bling Rivalry in the AACR2 “Family”: The Potential for Agreement on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of All Types of Materials.” *American Archivist*, 53(1): 76-93.
- Maxwell, Robert L. & Margaret F. Maxwell. 1997. *Maxwell’s Handbook for AACR2R: Explaining and Illustrating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and 1993 Amendment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Miller, Fredric M.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조경구 역 서울: 진리탐구. 원전: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1990.
- Working Group on Standards for Archival Description. 1989. “Standards for Archival Descriptio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Standards for Archival Description.” *American Archivist*, 52(4): 440-461.

КСІ